

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태호)</p> <p>가.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사무에 대한 수수료 부과(안 별표)</p> <p>○ 석유사업법시 행령 제14조(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)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 석유제품으로 “부생연료유판매업”을 신설하였고, 이에 석유사업법 제31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시 20,000원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○ 수수료 산정기준은 원가기준으로 하고 있으며, 20,000원은 원가의 82% 수준이며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, 용제대리점 등록 시 수수료는 현행 30,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.</p> <p>※ 부생연료유 : 원유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사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, 이 때 납사정제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주로 산업용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.</p> <p>※ 용제 : 원유분해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페인트 등을 녹이는 용액으로 신나류 등을 말함.</p> <p>나. “생활보호법”이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으로 바됨에 따라 수수료감면대상 중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임(안 제6조제2호)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887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1년 6월 일 행정자치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6월 9일,</p>	의안 번호	887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1년 6월 11일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6월 25일 상정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p>○ 지방재정법시 행령 개정(2000.10.20)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·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며,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○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·허가기간·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(안 제5조).</p> <p>○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78조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“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”的 확정사항을 포함함(안 제7조).</p> <p>○ 서울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함(안 제22조).</p> <p>- 현 행 : 매각대금 5년 이내, 이자 연8% 분할납부</p> <p>- 개 정 : 매각대금 10년 이내, 이자 연5% 분할납부</p> <p>○ 공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함(안 제25조).</p> <p>○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100조의3제2항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·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, 전세금의 산출방법,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함 (안 제25조의2).</p> <p>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제2항).</p>
의안 번호	887	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변상금을 부과·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,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2).</li> </ul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태호)</p> <p>가. 공공시설의 위탁관리(안 제5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“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은 대부·매각·교환·양도·신탁 또는 대물변제 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또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” 규정하고 있으며,</li> <li>○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서 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84조의2에서 “관리위탁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, 또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·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” 규정하고 있고,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92조(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에서 “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을 하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” 규정하고 있음.</li> <li>○ 이와 같은 근거규정에 의하여 본 개정조례 안은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 또는 전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</li> </ul> <p>나. 공유재산심의회(안 제7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“공정이 50% 이상 진척된 건물, 기타 시설물”을 포함하고자 함. 이는 동법시행령 제78조(공유재산의 종류)가 “공용재산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”과 “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”을 추가하도록 개정되므로 해서 관련조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.</li> <li>○ 이는 현재 건설 중인 상암월드컵전용구장</li> </ul>	<p>인 경우 현재 건설 중이므로 기존 법령에 의하면 준공이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될 수 없고, 따라서 위탁관리 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공전에도 위탁계약이 가능하므로 위탁받은자가 미리 위탁물을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다. 관리 및 처분(안 제11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7조제11항으로 이관하고 기타 관련법령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</li> <li>라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·매각대상 등(안 제20조의2)</li> <li>○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된 사항을 법 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것임.</li> </ul> <p>마. 매각대금의 분할납부(안 제22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조례에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한 경우 분할납부조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한의 도래로 삭제하는 것임.</li> <li>○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(대금납부와 연납) 제2항에서 “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연 3%~8%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연 4%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토록 규정하고, 현행조례 1, 2, 3, 4호가 시행령 100조와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것임.</li> </ul> <p>바.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(안 제23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평정가격의 50/100으로 규정한 것을 50/100 이상으로,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재산은 현행 25/1000에서 25/1000 이상으로, 주한 외국공관용 재산은 현행 40/1000에서 40/1000 이상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 이는 시행령 제92조에서 “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평정가격의 연 10/1000을 하한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” 규정되어 있으며, 조례 개정안에서 탄력적으로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</li> </ul> <p>사. 대부료에 관한 특례(안 제23조의2)</p>
--	--

<p>○ 현행조례 제23조의2 제2항에서 “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의하여 경쟁입찰 하였으나,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%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5에서 조례와 다르게 개정(2000.10.20)함으로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아.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(안 제25조의2)</p> <p>○ 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전세대상재산, 전세금납부방법, 전세금액, 전세금관리, 전세금반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</p> <p>자. 변상금의 청문 등(안 제28조의2)</p> <p>○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·징수받은 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문제도를 둘으로써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변상금청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	<p>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함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○ 합의제기관의 장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2항제4호).</p> <p>○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특수공인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「전자이미지공인」을 추가함(안 제3조의2).</p> <p>○ 공인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, 전자문서·모사전송기 문서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.</p> <p>○ 공인은 시장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고,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</p> <p>○ 전자이미지공인은 시장에게 등록하고,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10조).</p> <p>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태호)</p> <p>가. 합의제기관의 장도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2항제4호)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합의제기관의 장은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</p> <p>나. 특수공인(안 제3조의2)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, 기타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었음.</p> <p>다. 공인의 등록(안 제8조) 기존에는 공인을 교부하였으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교부하는 제도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인은 등록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.</p> <p>라.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(안 제10조) 전자결재가 일반화됨으로써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, 이는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한 것임.</p> <p>마. 공인의 공고(안 제11조)</p>				
<p>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906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6월 14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1년 6월 15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6월 25일 상정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p>○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)이 개정되어 관련</p>	의안	906	번호		<p>2001년 6월 일 행정자치위원회</p> <p>2001년 6월 14일</p> <p>2001년 6월 25일</p>
의안	906				
번호					